

4. 기 타

가. 2008.06.02.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교통행정과(☎02-879-6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734호
관악호신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35-10 관악호신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서류를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일로부터 14일간(2019.11.07. ~ 2019.11.21.)

2.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도서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관악호신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봉천동(청룡동) 1535-10

- 구역면적 : 3,153.30㎡

- 사업시행자 : 호신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3년

-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7층, 아파트 1개동 82세대

5. 의견제출 : 관악구청 주택과

6.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2019년 11월 21일까지)

7.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879-6322)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736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지 공시송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와 관련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 고 기 간 : 2019. 11. 7. ~ 2019. 11. 21.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번	위반 소재지	위반 총호수	위반 면적(㎡)	건축주	기본주소	상 세 주 소	사유
1	난향12길 **	옥상	5㎡	김*자	서울특별시	난향12길 **(신림동)	폐문

(난향동 675-**)				관악구		부재
--------------	--	--	--	-----	--	----

라. 서 류 명 칭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지 공시송달

마. 시정촉구기간 : 2019. 12. 11.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 기간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촉구하오며, 시정 시 결과를 우리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을 실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 (☎87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739호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공 고 명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공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22.(15일간)

3.공고대상 : 서울37라5978(명용건설-주) 외 3명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사유	운행정지명령일자	비 고
1	서울37라5978	EF쏘나타	명용건설-주	소유자의 요청	2019.11.1.	
2	서울40다8477	그랜저	(주)케이제이기술단	소유자의 요청	2019.11.1.	
3	41소7127	싼타페(SANTAFE)	이*민	소유자의 요청	2019.11.4.	
4	91다0669	이-마이티	이*민, 이*재	소유자의 요청	2019.11.4.	

4.공고방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지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74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고지, 수시고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사전고지, 수시부과, 독촉및압류예고)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